

- ① '을'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.
다만, '갑'과 '을'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.
- ② '갑'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'을'은 면책된다.

【제7조】 지연배상

- ① '갑'이 공사금액 지급을 지연한 경우 '갑'은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'을'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그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.
- ② '을'이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'을'은 '갑'에게 공사완료 이전 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의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'갑'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제5조1항에 따라 추가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 공사기간은 공사지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【제8조】 계약해제 또는 해지

- ① '갑' 또는 '을'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, 해지할 수 있다.
 - 1. '갑' 또는 '을'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.
 - 2. '갑' 또는 '을'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.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.

【제9조】 분쟁의 해결

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,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
년 월 일

(갑)

연락처 :

주 소 :

대표자 : (인)

(을)

사업자번호 : 841-88-03615

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, 비110호

회사명 : 주식회사 아정당인테리어

대표자 : 김 민 기 , 이 범 용 (인)